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소망재가돌봄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재가급여)
지정일	2025. 1.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620, 405호
대표자(시설장)	오세영(권우상)
위반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처분내용 (원처분)	업무정지 50일 (2026.7.1.~2026.8.19.)

나. 공표기간: 2026. 7. 13. ~ 2027. 1. 12.(6개월)

다. 공표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파 주 시 장